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6일 03시 42분



목차

목차	2
무단방치차량처리	3
자동차 무단방치란? (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)	3
무단방치 자동차 처리	3
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 처벌	3

주정차위반	주정차단속안내	무단방치차량처리	화물운송인허가
자동차 검사안내 문자신청 ㄱ	자동차 체납내역 조회,납부 ㄱ	의무보험 가입조회 확인 ㄱ	

자동차 무단방치란? (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)

-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
-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

🔗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

-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강제견인 후 자진처리명령을 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폐차를 실시하고 사건을 수사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.

🔗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 처벌

-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~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
-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송치되어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.

범칙행위	범칙금액(단위:만원)			비 고
	승용자동차	승합, 화물, 특수 자동차		
		경형소형	중형대형	
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한 경우	20	20	30	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제86조제1항
자진처리명령을 불이행한 경우	100	100	150	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